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안 번호	462
----------	-----

제의연월일 : 2024. 11. 21.

제 의 자 : 의 장

1. 제의이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6조,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 따라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의명 :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 기 간 : 2024. 11. 21. ~ 12. 20. (30일간)
- 예산,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의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연간 50일 이내로 한다.

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는 회의 총일수 범위에서 필요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집회)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